

부동산공시법 배상용 교수 4회 (04/02)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은 검사측량을 포함하여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 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 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 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경계복원측량이나 지적현황측량의 측량성과에 대하여는 검사측량하지 아니한다.
- ④ 지적삼각점측량성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검사한다.
- ⑤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2. 아래의 조건에서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측량기간과 검사측량기간으로 옳은 것은?

甲의 토지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로서 지적기준점을 13점 설치하여 지적측량한다.

측량기간 : 5일 검사기간 : 4일
측량기간 : 9일 검사기간 : 4일
측량기간 : 8일 검사기간 : 9일
측량기간 : 9일 검사기간 : 8일

(5) 측량기간 : 5일 검사기간 : 9일

3. 다음은 지적측량적부(재)심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60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③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지체없이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법 배상용 교수 4회 (04/02)

4.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등기할 수 있다.
- ② 공유자 중 1인 지분에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분할절차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가능하다.
- ④ 분할절차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가능하다.
- ⑤ 1필의 토지 일부에 분할절차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다음 중 등기할 수 있는 것은?

- ①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 ② 공유자 중 1인이 자기의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 ③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의 상속분만에 관한 상속등기
- ④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1인이 가등기권리자 전원 명의의 본등기
- ⑤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가처분등기

6. 다음 중 주등기로 기록하는 등기는?

- ① 전세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 ② 환매특약등기
- ③ 소유권이전가등기의 이전등기
- ④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전세권변경등기
- ⑤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7.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소유권이전등기는 주등기이나 전세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 ②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 ③ 저당권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행한다.
- ④ 전세권말소등기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로 기록한다.
- ⑤ 소유권이전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는 주등기로 기록한다.

부동산공시법 배상용 교수 4회 (04/02)

객관식진도학습 정답

1.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u>다만 검사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은 의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u>

2. ②

경계복원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이며 검사측량기간은 0일이다.

그리고 지적기준점13점의 측량기간은 4일이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다.

그러므로 전체측량기간은 9일 전체측량검사기간은 4일이다.

3. (5)

해설

-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u>30일</u>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 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③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u>60일</u>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u>7일</u> 이내에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4. ⑤

해설

-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 ② 공유자 중 1인 지분에 임차권은 설정할 수 없다.
- ③ 분할절차를 선행한 후에 건물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가능하다.
- ④ 분할절차를 선행한 후에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가능하다.

5. ①

해설

- ② 공유자 중 1인이 자기의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 ③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의 상속분만에 관한 상속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 ④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1인이 가등기권리자 전원 명의의 본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 ⑤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가처분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부동산공시법 배상용 교수 4회 (04/02)

6. ⑤

해설

①②③④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7. ②

해설

- ① 소유권이전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는 <u>주등기로 한다.</u>
- ③ 저당권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u>주등기로 행한다.</u>
- ④ 전세권말소등기는 <u>주등기로 기록한다.</u>
- ⑤ 소유권이전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는 <u>부기등기로 기록한다.</u>